

#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( 허 은 의원 발의 )

의안 번호	41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8 . 10 . 12 .

발의자 : 허 은 의원

찬성자 : 김정우·박미효·이현숙·  
김성주·김익태·박지남·  
안종숙·고광민·장옥준·  
최종배·전경희·최원준·  
김안숙·오세철의원(14명)

### 1. 제안이유

서초구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소방시설 설치 부담을 해소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의 정의.....(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.....(안 제3조)
- 다.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.....(안 제4조)
- 라.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.....(안 제5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2조의2 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

「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」

「건축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

나. 예산조치 : 예산반영 검토 필요

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화재안전취약가구”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.
  - 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  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  - 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 - 라.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
  - 마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
- 바.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

2. “주택용 소방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.

- 가. 소화기
- 나. 단독경보형 감지기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)**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)**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 안전취약가구로 한다.

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.

**제6조(지원 신청)**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[별지 서식]

##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

지 원 대 상 자	성명	생년월일	세대원수	
	주소	전화번호 (휴대폰)		
	대상자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상위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문화가족	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가족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소년 가장 <input type="checkbox"/> 홀로사는 노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담당공무원 확인란
지원시설명	<input type="checkbox"/> 소화기 <input type="checkbox"/> 감지기			※필요한 시설 모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하세요
지원희망시기	년 월 일			

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.

三一書院

# 신 청 인 (인)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(이하 “개인정보라 한다)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 동의하지 않습니다.

※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·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가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자 :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
나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 :  
다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항목 : 신청서기재사항 (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 등)  
라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소방시설 설치 지원 기간

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.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

## <관계법령>

### 「지방자치법」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**제66조(의안의 발의)**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7. 14.>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7. 14.>

### 「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」

**제21조(의안의 제출·발의)**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[제18조에서 이동 2010.11.25.]

###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**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, 일관성,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,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[본조신설 2015. 1. 20.]

**제8조(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**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> 1.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2.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)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(이하 "주택용 소방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>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4. 1. 7., 2015. 7. 24.>[본조신설 2011. 8. 4.]

#### **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**

**제13조(주택용 소방시설)**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"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.[본조신설 2016. 1. 19.]